

최저임금제와 빈곤율¹⁾

Effect of Minimum Wage on Poverty Rate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는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에 주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대상자의 분포와 최저임금의 적용이 빈곤율과 빈곤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빈곤층의 비중이 커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결과 실제로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취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전체 빈곤층에서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커지고 취업이 더 이상 빈곤탈출의 온전한 해법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빈곤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근로빈곤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빈곤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단절과 저임금 문제인 까

닭에 빈곤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으로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 따라서 본고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분포를 통해 빈곤해소정책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검토해보고, 최저임금의 적용이 빈곤율과 빈곤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적 시

1) 본 원고는 강신욱 외(2015).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 '제8장 최저임금제도의 평가' 내용을 발췌 및 보완함.

사점을 얻고자 한다.

2.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0.1%에 불과했으나²⁾, 점차 산업 및 사업장 규모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전산업 전규모의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적용 비율이 100%에 이른다. 적용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일급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 역시 <표 1>과 같이 증가되었다. 물가상승을 통제할 실질 최저임금을 통해서도 시행 초기 매우 낮았던 최저임금이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와 비중을 증가시켰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대상근로자 수와 대상근로자 수 대비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수의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그림 1>과 같이 각각 2003년 849천명, 6.4%에서 2014년 2,565천명, 14.5%로 증가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사용한 2003년 이전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영향

률은 2.1%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급격히 확대된 후 2000년대 후반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임금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커지면서 증가세를 보여 2016년에는 18.2%에 이르는 높은 영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 및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분석자료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이 빈곤율과 깊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를 이용하며, 분석에는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여부(최저임금 미달자)와 가구 및 개인의 빈곤여부와 소득분위가 사용된다.

<표 2>는 1~17차(1998~2014년)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연도별 최저시급보다 시간당 임금³⁾이 낮은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절대치가 <그림 1>의 영향률보다 전체적으로 낮긴 하지만, 2000년대 전반에 걸친 증가세와 2000년대 후반

2)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3) 세금공제 후 월평균 임금을 주 근로시간의 4.3배로 나눈 값이며, 주 근로시간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면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사용하였음.

표 1.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및 인상률, 적용대상 추이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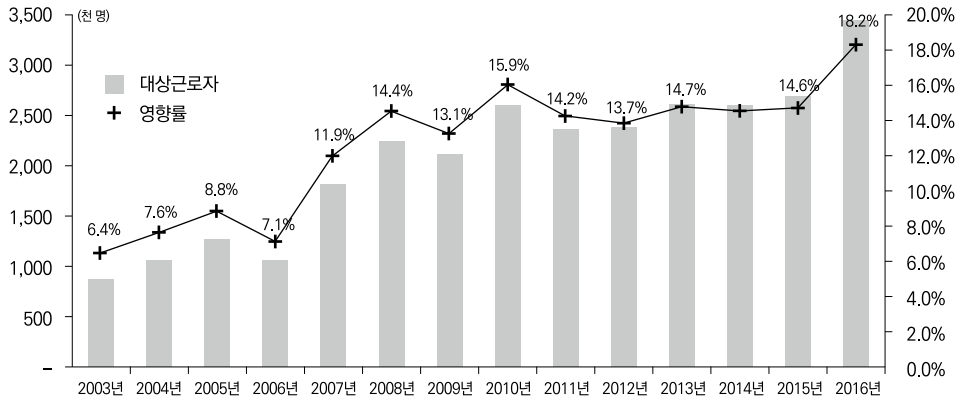
적용년도	일급 (8시간기준)	시간급	인상률(%)	시간급 (실질)	인상률 (실질,%)	적용 대상	
						산업	규모
1988	3,700 3,900	1그룹462.50 2그룹487.50	-		-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989	4,800	600	1그룹29.7 2그룹23.7	1,462		제조업, 광업, 건설업	
1990	5,520	690	15.0	1,549	5.9	전산업	
1991	6,560	820	18.8	1,684	8.7		
1992	7,400	925	12.8	1,788	6.2		
1993	8,040	1,005	8.6	1,854	3.7		
1994.1~1994.8	8,680	1,085	8.0	1,883	1.6		
1994.9~1995.8	9,360	1,170	7.8	1,944	3.2		
1995.9~1996.8	10,200	1,275	9.0	2,019	3.9		
1996.9~1997.8	11,200	1,400	9.8	2,123	5.1		
1997.9~1998.8	11,880	1,485	6.1	2,094	1.3		
1998.9~1999.8	12,200	1,525	2.7	2,133	1.9		
1999.9~2000.8	12,800	1,600	4.9	2,189	2.6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9~2001.8	14,920	1,865	16.6	2,452	12.0	전산업	전규모
2001.9~2002.8	16,800	2,100	12.6	2,686	9.6		
2002.9~2003.8	18,200	2,275	8.3	2,811	4.7		
2003.9~2004.8	20,080	2,510	10.3	2,994	6.5		
2004.9~2005.8	22,720	2,840	13.1	3,297	10.1		
2005.9~2006.12	24,800	3,100	9.2	3,520	6.8		
2007	27,840	3,480	12.3	3,854	9.5		
2008	30,160	3,770	8.3	3,988	3.5		
2009	32,000	4,000	6.1	4,118	3.3		
2010	32,880	4,110	2.8	4,110	0.2		
2011	34,560	4,320	5.1	4,154	1.1		
2012	36,640	4,580	6.0	4,309	3.7		
2013	38,880	4,860	6.1	4,514	4.7		
2014	41,680	5,210	7.2	4,778	5.9		
2015	44,640	5,580	7.1	5,082	6.4		
2016	48,240	6,030	8.1	-	-		

자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에서 2016.3.2. 인출.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3&NUM=180에서 2016.3.2. 인출.

그림 1. 최저임금 영향률¹⁾과 대상근로자 수

(단위: 천명, %)



주: 1)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 영향률=대상근로자 수·적용대상임금근로자 수·100

2)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003년 이후를 사용
 자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에서 2016.3.2. 인출.

이후의 소폭 하락 및 정체가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패널이 이 분석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빈곤여부는 OECD 상대빈곤 정의를 활용한다. 가구 경상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를 이용해 실질화한 후, 역시 OECD 방식(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으로 균등화한 가구소득 중위값의 50%, 60%를 기준으로 삼는다.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각 기준값보다 낮을 경우 빈곤가구이며,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을 빈곤상태로 분류한다. 분위는 빈곤을 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균등화한 가구소득 순으로 10개의 구간으로 나눠 각 가구가 속한 구간을 말한다.⁴⁾

4. 분석결과

1) 소득계층별 분포

최저임금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첫 번째로 최저임금 미달자 혹은 대상자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는 이유는 최저임금 적용 및 인상이 빈곤가구나 최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4)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간 소득변수들은 전년도의 값이 조사되었다는 점임. 즉, t기에는 조사시점 전년도인 (t-1)기의 연간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t기의 가구내 최저임금 근로자의 분포와 빈곤의 관계를 보고자 하므로 (t+1)기에 보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t기의 빈곤상태 및 소득분위를 도출하였음. 따라서 2015년 자료에 포함될 2014년의 연간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빈곤이나 소득계층이 필요한 모든 분석에서 2014년은 제외됨.

표 2. 연도별 취업자 수 추이와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연도	관측치	취업자 수	임금근로자 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¹⁾
1998	13,321	6,429	4,013	2.9%
1999	12,031	6,254	3,973	4.1%
2000	11,194	5,789	3,762	3.0%
2001	11,021	5,779	3,859	3.8%
2002	10,924	5,891	3,987	4.0%
2003	11,501	6,143	4,213	5.0%
2004	11,654	6,215	4,274	6.0%
2005	11,570	6,097	4,104	7.4%
2006	11,741	6,200	4,307	7.7%
2007	11,840	6,249	4,352	8.7%
2008	11,720	6,217	4,373	10.7%
2009	14,470	7,832	5,434	11.5%
2010	13,618	7,601	5,329	9.0%
2011	13,389	7,609	5,418	9.0%
2012	13,405	7,628	5,517	7.3%
2013	13,281	7,559	5,501	9.8%
2014	12,578	7,230	5,385	9.6%

주: 1) 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가, 아니면 그 효과가 어느 다른 계층에게 귀결되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최저임금이 빈곤가구나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빈곤해소정책으로서 최저임금 제도를 고려할 필요는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Saget(2001)⁵⁾

는 개발도상국 국별 데이터를 이용해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소득계층은 빈곤층 가운데서도 빈곤선 가까이에 있는 중저소득층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로 3~4분위 이상의 중산층이며(Arango, 2004⁶⁾), 브라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 3분위 가구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umark외, 2006⁷⁾). 이러한 결과

5) Saget, C.(2001). Is the Minimum Wage an Effective Tool to Promote Decent Work and Reduce Poverty? The Experience of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Employment Paper 2001/13

6) Arango, C., and A. Pachon(2004). Minimum Wages in Colombia: Holding the Middle with a Bite on the Poor. Banco de la Republica Borradores de Economia No. 3224, Bogota, Colombia,

7) Neumark, D., W. Cunningham, and L. Siga(2006).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 Brazil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19962001."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0(1). pp. 136159.

는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비공식취업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극빈층이 제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Gindling, 2014⁸⁾), 노동시장의 특성 등으로 인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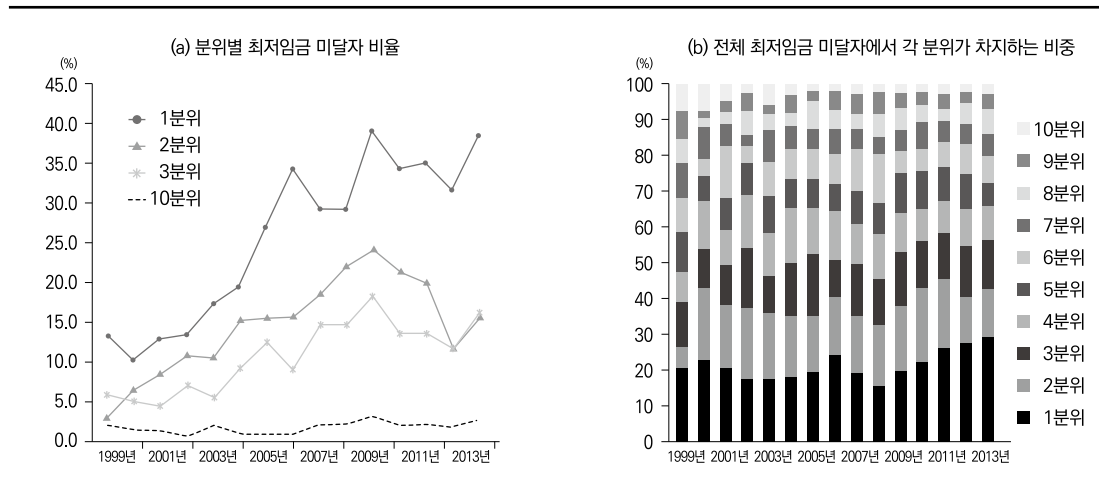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4]는 소득계층별 최저임금 미달자의 분포, 즉,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법한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2]는 각 분위에 속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며, [그림 4]는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각 분위의 미달자 비중이다. [그림 3]은 소득 10개 분위기를 빈곤/비빈곤 여부로 나누는 점만 다르다.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빈곤층과 하위분위, 특히 1분위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200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9~2013년 평균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가, 그리고 2분위의 19%가, 혹은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평균 비빈곤층의 약 7%만이 최저임금 미달자라는 사실과 대조된다.

비슷한 시기에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에서 하위 분위에 속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 속한 빈곤층이 약 30%를 차지하고(그림 3), 3분위 이하에 속한 최저임금 미달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그림 2). 따라서 최저임금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에게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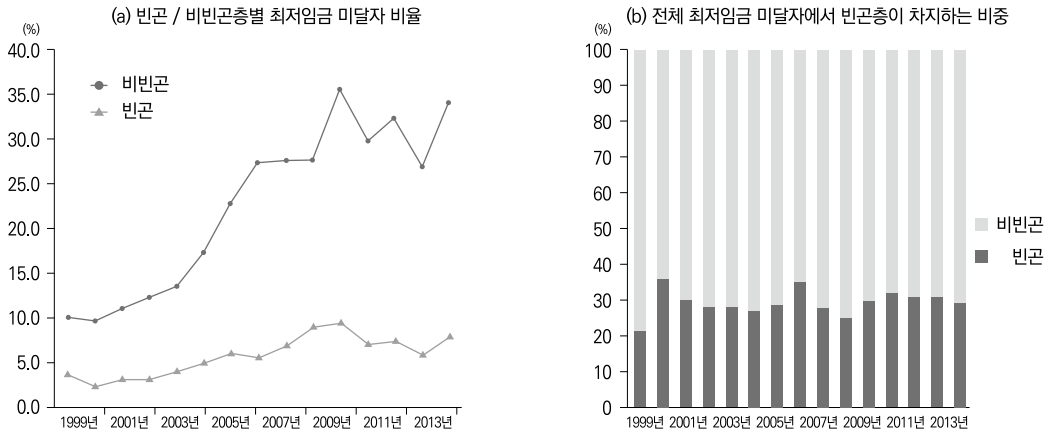
그림 2. 소득분위별 최저임금 미달자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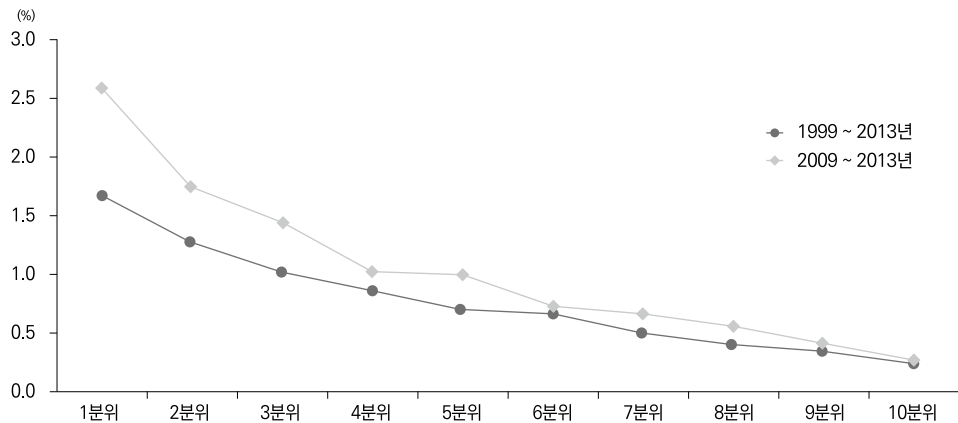
8) Gindling, T. H. (2014). Does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ZA World of Labor 2014:30.

그림 3.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개인) 최저임금 미달자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그림 4. 임금근로자 대비 각 분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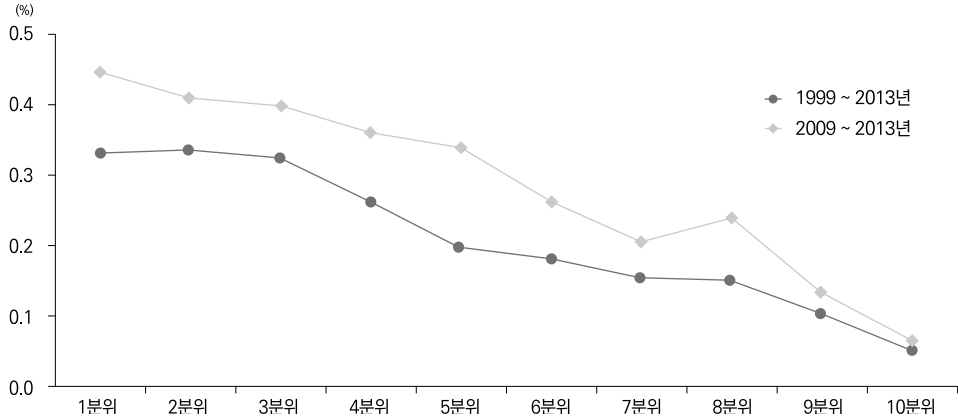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남재량⁹⁾은 임금근로자 대비 분위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을 나타내는 곡선이 역 U자형으로 최저소득 분위에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

9) 남재량(2011).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효과. 최저임금 효과분석(정진호 외) 제5장.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5. 임금근로자 대비 각 분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공식취업자)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어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2~17차 평균으로 해당 비율을 그려본 바에 따르면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 우하향하고 있어, 1, 2, 3분위 순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각 분위의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최근 5년 평균 하위 분위의 비중은 더욱 커져 최저임금 인상이 낳는 소득분배 개

선과 빈곤율 감소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미달자라 해도 비공식 취업인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식적 취업¹⁰⁾(연금, 고용, 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그림 4]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그림 5) 최저임금 미달자 가

표 3. 주 근로시간과 적용범위에 따른 4개의 가상적 시나리오

최저임금 적용범위	주 근로시간	주 40시간	현재의 주당 근로시간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시나리오 1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공식취업자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0) 의료보험인 경우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고, 지역과 직장가입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식취업자를 선별하는데 사용하지 않음.

운데 공식취업자가 1/3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그림 4]에 비해 1, 2분위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추세는 사라지지만 1~3분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계층이 여전히 저소득분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평균으로 보아 이러한 추세는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하위분위에서 공식취업자로의 진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을 때, 적용범위와 주 근로시간에 따른 4개의 가상적 경상소득 분포(표 3)에 따라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가상적 시나리오의 첫 번째 기준은 주 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혹은 현재의 주당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두 번째는 적용범위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모든 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거나, 미달자 가운데 공식취업자만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적 경상소득은 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근로자의 월 실질임금을 '각 연도의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주 근로시간×4.3'으로 계산한 후, 실질경상소득에서 해당 근로자

의 실제 임금 대신 계산식에서 도출된 가상적 임금을 더해 구한다. 만일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적용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가구의 연도별 가상적 경상소득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중위소득 대비 비중에 따른 2가지 빈곤의 정의에 따라 빈곤율을 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그 폭이 크지는 않으나 모든 가상적 시나리오의 빈곤율이 실제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 최저임금 적용이 빈곤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최저임금 미달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1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실제보다 연평균 0.4%p 낮고, 60%를 기준으로 하면 0.6%p 가량 낮다. 이는 현재의 근로시간을 가정한 시나리오 2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져, 각각 0.7%p, 1%p에 이른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적용했을 때 빈곤율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자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적인 월 임금 상승의 효과를 본다는 의미이다. 시나리오 3의 결과는 그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시나리오 1과 거의 같고, 그에 반해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2에 비해 빈곤율 감소폭이 작아 비공식취업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3) 빈곤격차(poverty gap)에 미치는 영향

본 소절에서는 최저임금 미달자가 최저임금을

표 4.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가상적 경상소득으로부터 얻은 빈곤율

연도	경상소득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중위경상소득 50% 미만					
1998	13.3%	12.5%	12.5%	12.6%	12.6%
1999	11.8%	12.3%	12.2%	12.2%	12.2%
2000	13.8%	13.1%	13.0%	13.0%	13.0%
2001	14.3%	13.7%	13.7%	13.7%	13.7%
2002	13.7%	13.6%	13.4%	13.5%	13.5%
2003	14.6%	14.3%	14.0%	14.2%	14.1%
2004	14.0%	13.8%	13.5%	14.0%	13.8%
2005	13.1%	12.8%	12.4%	12.8%	12.6%
2006	13.5%	13.3%	12.9%	13.4%	13.0%
2007	12.7%	12.7%	12.1%	12.6%	12.4%
2008	13.0%	12.8%	12.4%	12.9%	12.6%
2009	13.5%	12.5%	12.0%	12.6%	12.5%
2010	12.5%	12.5%	11.9%	12.5%	12.2%
2011	11.2%	10.9%	10.8%	11.1%	10.8%
2012	11.3%	10.8%	10.7%	11.0%	10.9%
2013	10.1%	9.7%	9.5%	9.8%	9.7%
중위경상소득 60% 미만					
1998	18.5%	17.9%	17.8%	17.9%	17.9%
1999	18.0%	17.3%	17.2%	17.3%	17.3%
2000	20.0%	19.1%	18.8%	18.9%	18.9%
2001	18.5%	17.7%	17.6%	17.7%	17.6%
2002	18.2%	17.7%	17.6%	17.6%	17.6%
2003	19.3%	18.6%	18.7%	18.6%	18.5%
2004	19.2%	18.7%	18.6%	19.0%	18.8%
2005	18.3%	17.8%	17.5%	17.8%	17.7%
2006	18.5%	18.2%	18.0%	18.2%	18.1%
2007	18.3%	18.2%	17.8%	18.3%	18.0%
2008	17.7%	17.4%	17.1%	17.4%	17.1%
2009	18.9%	17.3%	16.8%	17.3%	17.2%
2010	17.8%	17.4%	16.9%	17.5%	17.3%
2011	16.4%	16.2%	15.9%	16.2%	16.0%
2012	17.2%	16.8%	16.4%	16.8%	16.6%
2013	15.3%	15.1%	14.5%	14.9%	14.8%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적용받았을 때, 한부모-두자녀 가구와 홀벌이-두자녀 가구의 가구주가 최저임금 근로자일 때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의 비중, 혹은 빈곤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노동패널을 이용해 알아보고자 한다.

OECD(2015)¹¹⁾에 따르면 한국에서 두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 최저임금 근로자일 때 해당 가구의 소득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33%, 두 자녀가 있는 홀벌이 가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일 때 중위소득의 28%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도 노동패널을 이용해 두 가지 가구유형별 가구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라서 빈곤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부모-두자녀나 홀벌이-두자녀 가구에서 가구주 1인만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전일제 근로(주

표 5. 가구유형별 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위: 만원, %)

연도	(1) 한부모, 두자녀 소득 (만원)	(2) 홀벌이, 두자녀 소득 (만원)	(3) 시장중위 50% (상대빈곤선, 만원)	(4) 중위소득 대비 비율 = (1)/((3)·2)	(5) 중위소득 대비 비율 = (2)/((3)·2)
1998	22.4	19.4	50.9	22.0%	19.1%
1999	21.4	18.5	53.5	20.0%	17.3%
2000	22.2	19.2	57.9	19.2%	16.6%
2001	25.3	21.9	65.9	19.2%	16.6%
2002	27.4	23.7	66.9	20.5%	17.7%
2003	28.9	25.0	70.1	20.6%	17.8%
2004	30.8	26.7	70.8	21.8%	18.9%
2005	33.6	29.1	73.6	22.8%	19.8%
2006	35.7	30.9	77.3	23.1%	20.0%
2007	39.2	34.0	81.9	23.9%	20.8%
2008	41.5	35.9	78.7	26.4%	22.8%
2009	42.0	36.4	80.2	26.2%	22.7%
2010	42.0	36.4	85.0	24.7%	21.4%
2011	42.9	37.2	84.5	25.4%	22.0%
2012	43.7	37.9	86.9	25.1%	21.8%
2013	45.4	39.3	87.1	26.1%	22.6%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11) OECD(2015),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social/Focus-on-Minimum-Wages-after-the-crisis-2015.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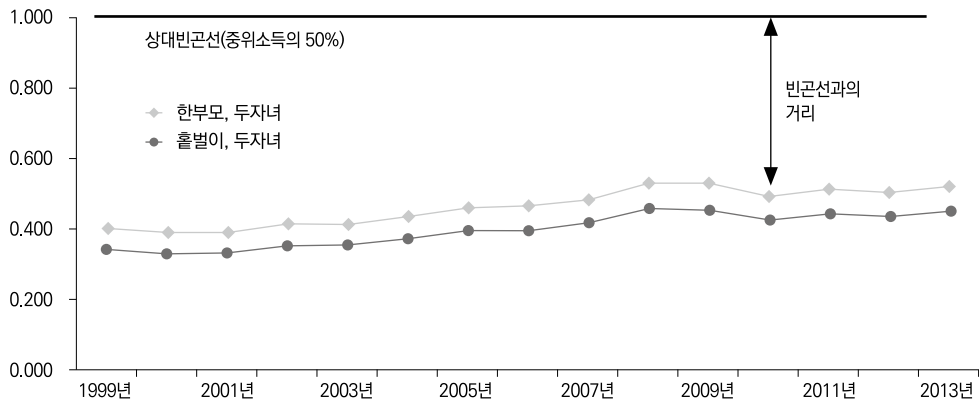
40시간)할 때 가구소득은 월 최저임금을 각각의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눈 값이다. OECD 모형에서는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균등화를 통해 각 가구의 1인에 해당하는 소득을 계산하므로 가구원 수만이 의미 있는 가구유형 기준이다. 즉, 한부모-두자녀 가구와 홀벌이-두자녀 가구는 각각 3인, 4인 가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가구의 노동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이 <표 5>의 (1)과 (2)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가구의 노동소득은 1인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소득이 전부이므로 계산식 '각 연도의 시간당 실질최저임금×40시간(전일제 기

준 주 근로시간)×4.3'으로 구할 수 있다. 표에서 (3)의 시장 중위소득의 50%는 노동패널의 각 연도 가구 실질노동소득 중위값의 50%이다¹²⁾. 표의 (4)와 (5)는 각각 OECD의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비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값으로, (1)과 (2)를 중위소득((3)의 2배)으로 나눈 값이다.

OECD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비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2013년의 수치들을 이용한다. 2013년 한부모-두자녀 가정의 균등화 소득은 45.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26.1%에 불과하고, 홀벌이-두자녀 가정의 균등화 소득은 39.3만원으로 중위소득의 22.6%에 불

그림 6. 가구유형별 최저임금 근로소득과 상대빈곤선과의 거리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12) 2013년의 가구 실질노동소득 중위값의 50%인 87.1만원은 2015년 1인 기준중위소득(정부발표) 1,562,337원의 50%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2013년 값으로 환산한 76.1만원보다 11만원만큼 높게 나타남.

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제비교에서 보
고한 비율 33%, 28%보다 5~7%p 낮다. 이는 노
동패널에서 가구 실질노동소득의 중위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노동패널이 여전히 우리나라 근로연령층 가구의
특성을 충실히 대변한다고 했을 때 본 연구의 결
과가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3.4인 가구에서 1인의 성인만이 최저임금 근로
자로 일하고 있을 때, 그 1인이 주 40시간의 전
일제 근로를 한다하더라도 빈곤격차가 매우 크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은 이러한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혹은 빈곤선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
로 소득이 0인 지점에서 상대빈곤선까지의 거
리를 1이라 했을 때, 2013년에는 그 거리가
0.48~0.55에 달함을 보여준다. 거칠게 표현하자
면, 해당 가구는 중위소득 50%의 절반 정도의 노
동소득 밖에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가
구소득이 빈곤선으로부터 멀다는 사실은 최저임
금의 적용 및 소폭 인상이 빈곤탈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빈곤의 격차를 낮추며 장기적으로 빈곤을 탈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5. 나가며

저임금 미달자 분포와 최저임금 적용이 빈곤
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에 미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빈
곤율이 실제보다 0.5~0.8%p정도(시나리오 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빈곤가구의 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비율
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4와 같이 빈곤감소 효과
가 반감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공식취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므로, 최저
임금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
는 제도가 되려면 사회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키
는 노력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저임
금 적용 후에도 빈곤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최저
임금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
정액수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